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7일, 박성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9.) 상정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12.4.)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2.4.) 상정,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사용·수익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경우 여건 변화에 따른 사정 변경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부대사업의 국유·공유 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삭제 및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
정·설립할 수 있다.

안 제44조제1항 중 “제230조제1항부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
230조제2항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중전의 제3조) 중 “제41조의5,
제43조 및 제44조의”를 “제41조, 제41조의5 및 제43조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략)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 기간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u><삭제></u>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0”으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을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보고받은”으로, “제출일부터”를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로, “등록신청서와”를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를”을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

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생략)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
-----100

2. -----
-----100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보고받은-----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② (생략)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 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 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 -----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 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 를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 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 ----- -----.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 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	--